



손해보험의 이해 (18): 정책성보험 – 가축재해보험

김동겸 선임연구원

■ 가축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, 화재,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통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, 농림수산물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정책성 보험임.

● 정부는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피해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장치를 마련을 위해 1997년 가축공제를 도입하였으며,¹⁾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된 2010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농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함.

– 가축재해보험 운영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²⁾의 종류로 농작물재해보험, 가축재해보험,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들고 있음.

■ 2013년 기준으로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축종은 총 15축종이며,³⁾ 지역별로는 전국을 가축재해보험의 운영 대상으로 함.

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1997년부터 3개년 동안은 “소”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, 2000년부터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함.⁴⁾

● 한편,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자연재해, 화재, 질병 등을 보험대상 재해범위로 삼고 있음.

– 소나 말과 같은 대가축의 경우는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으며, 돼지, 가금 등 중·소 가축은 화재나 자연재해(풍수해, 설해 등) 위주로 위험을 보장함.

- 1) 정부는 1997년부터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에 의거하여 가축공제(보험)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축산인 관련 법인에 대해 공제료의 일부를 보조하게 되었으나,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(보험가입자), 제8조(보험사업자), 제19조(재정지원)에 의거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운영되게 됨.
- 2)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작물·양식수산물·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, 병충해, 조수해, 질병 또는 화재 등과 같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.
- 3) 2013년 기준으로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축종은 본사업 14축종(소, 말, 돼지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벌, 토끼), 시범사업 2축종(관상조, 오소리) 등 총 16축종임.
- 4) (1997~1999년) 소 → (2000년) 말, 돼지 → (2002년) 닭 → (2004년) 오리 → (2005년) 꿩, 메추리 등과 같이 보험의 목적물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음.

■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가축재해보험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, 정부에서는 가축재해보험 활성화 및 양축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50%를 국고에서 보조지원하고 있음.

- 다만,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축산법 제22조 제1항(축산업의 허가 등)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.
- 최근 3년 동안 가축보험가입률⁵⁾ 추이를 보게 되면, 52.1%(2010년), 54.1%(2011년), 68.9%(2012년)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.⁶⁾

■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납부하는 총보험료의 50%를 보조하고 있으며, 보험사고 발생 시 각 축종별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80~100%까지 보험금이 지급됨.

- 정부에서는 말에 대해 마리당 가입금액 4,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%를 지원하지만, 4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70%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%를 지원
- 한편, 소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%까지를 보상하고 있으며, 돼지의 경우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95~100% 또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함.⁷⁾

■ 2013년 현재 NH농협손해보험과 LIG컨소시엄(LIG손해보험, 현대화재해상보험, 삼성화재해상보험, 동부화재해상보험)이 가축재해보험의 사업대상자 즉, 재해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.

- 1997년 가축공제 시범사업이 도입될 당시에는 (구)축협중앙회만이 사업운영자로 참여하였으나,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6월부터 민영보험사가 가축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.
-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확대, 상품 다양화, 보험요율 인하 등을 통해 가축보험을 활성화시킬 것을 목표로 함.

5) 가축보험가입률 = 보험가입두수 / 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

6)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(2013), 2013년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.

7) 농협손해보험(주)의 가축재해보험상품 기준임.